

의안번호	제 473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 319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4월 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473

제출연월일 : 2013년 4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(도 출장소) 신설에 따른 정원사항과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도정 현안업무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3,028명 → 3,085명(+57명) (안 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0명 → 1,517명 (+57명)
-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(별표 3)
 - 일반직 53명 증원 :
(1·2급 +1명, 3급 +1명, 3·4급 +1명, 4급 +3명, 5급이하 +47명)
 - 별정직 1명 증원 : 5급상당이하 +1명
 - 연구직 4명 증원 : 연구관 +1명, 연구사 +3명
 - 소방직 : 소방정 +1명, 소방령이하 △1명
 - 기능직 : △1명

< 정원내용 >

- 경제자유구역청: 청장(1·2급), 본부장(3급), 부장·지청장(4급) 등
- 총액인건비 반영 및 법령개정사항 등 반영
 - 감사관(4급→3·4급),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관련(별정5급), 도립대 사무국(5급→4급)
- 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 직급상향(소방정)
- 현안업무 인력보강인력 증원: 보건환경연구원 세종시 수탁업무 추진 등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불 입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,028”를 “3,085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460”를 “1,517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 기관	사업소	출 장 소
총계	3,085	-				
정무직계	1	1				
도지사	1	1				
일반직계	1,213	-				
1~2급	1					1
2~3급	1		1			
3급	11	9		1		1
3~4급	2	2				
4급	65	40	7	5	7	6
5급이하소계	1,133	-				
별정직계	20	-				
1급 상당	1	1				
5급상당이하소계	19	-				
연구직계	143	-				
연구관	23	1		20	2	
연구사	120	-				
지도직계	24	-				
지도관	6			6		
지도사	18	-				
소방직계	1,456	-				
소방정	12	3		9		
소방령이하	1,444	-				
교육공무원계	42	-				
총장	1	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·전임강사	30			30		
조교	11	-				
기능직계	186	-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